
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16] <개정 2025. 12. 31.>

어구보증금(제85조의3 관련)

구분	형 태	금액기준
1. 통발	가. 영 별표 2 제2호거목 부도 거-1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-2에 따른 장어통발의 통발 및 깔때기	(통발) 300원/개 (깔때기) 3,000원/100개
	나.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-2,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-2 및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) 장구형의 통발 2) 원통형의 통발 중 직경 40cm 이하면서 높이가 12cm 이하인 것 3) 원통형의 통발 중 스프링이 설치된 것	1,000원/개
	다.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-2,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-2 및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통형의 통발. 다만, 나목2) 또는 3)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	2,000원/개
	라.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-2,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-2 및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뿔대형(반구형)의 통발	2,000원/개
	마.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-2,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-2 및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사각형의 통발	3,000원/개
	바.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-2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-2에 따른 통발 중 원뿔대형(대게류·붉은대게류)의 통발	3,000원/개

2. 그물	영 별표 2 제2호카목 부도 카-2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 부도 바-2에 따른 그물	2,000원/폭
3. 부표	가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2L 이상 ~ 25L 미만인 것	300원/개
	나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25L 이상 ~ 50L 미만인 것	1,000원/개
	다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50L 이상 ~ 100L 미만인 것	3,000원/개
	라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100L 이상 ~ 500L 미만인 것	6,000원/개
	마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500L 이상인 것	30,000원/개